

# 학교법인 이화학당 건축위원회 규정

1976. 3. 1. 제정

제 1 조 (설치) 학교법인 이화학당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 직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건축업무에 관하여 법인이사장(이하 “이사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에 학교법인 이화학당 건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 2 조 (구성) 위원회는 이사장, 상무이사, 이화여자대학교 총장, 법인 사무국장 및 이사장이 건축분야의 전문적 견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.

제 3 조 (임기) 전 조의 위원 중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4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 및 그 부설기관의 건축에 관한 사항
2. 기타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 5 조 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위원회가 심의하고자 하는 건축 소관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6 조 (상임위원) ①이사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인을 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②전 항의 상임위원은 무보수로 한다.

③상임위원은 위원회 또는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·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

제 7 조 (위임규정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1976. 3.1. 제정)

이 규정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